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0

발의연월일: 2020. 6. 11.

발 의 자:백혜련·정성호·황운하

고영인 · 김용민 · 김회재

이인영 · 김승남 · 조오석

윤관석 · 권인숙 · 김민석

박성준 · 양정숙 · 최종윤

박 정・박영순・홍익표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,997 만 9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3.8%에 달 하며, 서울의 경우에는 50.9%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임.

또한 최근 발표된 '2019년 주거실태조사'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.2년에 불과하고,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.1%(수도권은 20.0%)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.

이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(안 제6조).

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,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"임대인이"를 "임대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"로, "갱신거절"을 "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"로, "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"을 "아니하면"으로 하고, 같은 항 전단 뒤에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다만.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- 1. 임차인이 2기(期)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- 3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절반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
- 4.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
- 5.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

하지 못할 경우

- 6.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7. 임대인 본인이나 가구원이 임차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하는 경우
- 8.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 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 4년 이내에는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하지 못한다.
- ④ 제1항제6호 및 제7호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, 1년 이내에는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 단서 중 "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"을 "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"로 하며, 같은 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내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
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계약의 갱신) ① 임대인이	제6조(계약의 갱신) ① 임대인이
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	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
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	유로
임차인에게 <u>갱신거절</u> (更新拒絶)	
의 통지를 하지 <u>아니하거나 계</u>	계약조건 변경이나 갱
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	<u>신거절아니하</u>
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	<u>면</u>
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	
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	<u>다만, 차</u>
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	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
한 것으로 본다. <단서 신설>	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
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	
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	
경우에도 또한 같다.	
<u><신 설></u>	1. 임차인이 2기(期)의 차임액
	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
	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
	<u>경우</u>
<u><신 설></u>	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
	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<u><신 설></u>	3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
	이 임차주택의 절반 또는 일
	부를 전대한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2기(期)의 차임액(借賃額)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4.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 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
- 5.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- 6.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 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7. 임대인 본인이나 가구원이임차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하는 경우
- 8.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 4년 이내에는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을하지 못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 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. 다만, 증액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하다.

④ 제1항제6호 및 제7호 등 임 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갱신 되지 않은 경우, 1년 이내에는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하는 임 대차계약을 하지 못한다. 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당 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① -----증액청구 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 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----------.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내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.